(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3장 이용계약 및 비용 -

제 9조(이용계약 목적과 체결 방법)

1. 계약의 목적 :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 체결방법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평가 기준에 따라 관리 보관한다.

2)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 로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1부, 센터에 1부를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체결 한다.

3) 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 10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대리인)과 센터간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등급외 자와 센터장이 입소를 허락한 이용자는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중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는 경우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1조(계약자와 신원인수인 및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인 센터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할 수 없음)

2)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

4) 센터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입소 또는 이용보증금을 받지 않을 의무

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이용료 납부의 의무

2) 시설내 개인물건 사용으로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애완동물 사육금지등 청결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 의무와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무
6)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호존중하며 성희롱. 폭언. 폭설을 하지 않는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과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한 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 출장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 및 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 볍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12조(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1) 센터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급여(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 비용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4등급 기준/8시간이용/26일 사용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정하되 금액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과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액은 모두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하며,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고지한다.

제 13조(기타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 대상" 이라 한다)은 아래 각 호와 같으며, 이는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1. 이. 미용비 : 실비 부담 원칙으로 하되 자원 봉사자에 의한 경우 무료 제공.
2. 병원치료비. 약제비 : 실비 부담 원칙으로 수납한다.
3. 식사재료비

식사재료비 1식 3500원/ 간식비 1회 500원, 1일 1000원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되며, 수급자의 사정과 감경 수급자의 경우에는 40%~60% 할인 비용을 적용할 수 있고, 직원의 가족일 경우 50%)

4.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용품구매 또는 관련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과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5. 위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한 이용자는 식사재료비의 본인 부담을 면제 할 수 있다.

제 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센터내에서 센터내 규칙을 어기고,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생활에 반복해서 지장을 초래할 때
6.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가 심하여 센터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7.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를 포함한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예: 정신질환)를 고의적으로 숨겼을 때.

제 15조(이용료등 비용에 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제14조 3항 (식사 재료비) 관련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센터 직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 및 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 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에서 제외 한다.
6.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서**"를 작성한다.
7. 이용료등 비용에 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변경안내서(가정통신문 포함)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세 고지한다